



## 의료기관평가인증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

1.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원은 「환자안전법」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3. 위 호와 관련하여,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불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4. 또한,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5. 이에, '함께 보고하고, 함께 보호받는'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불임 1.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 
2.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. 끝.

#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장

수신자 강원대학교병원장(지역환자안전센터장), 대한간호협회장(지역환자안전센터장), 대한약사회장  
(지역환자안전센터장), 대한의사협회장(지역환자안전센터장), 삼성서울병원장(지역환자안전센  
터장), (가나다순)

팀원 허윤정 팀장 백현지 부장 서희정 센터장

전결 03/25

협조자

시행 중앙환자안전센터-477 (2024.03.25.) 접수

( )

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(여의도동)

/ https://www.koija.or.kr/

전화 02-2076-0651 전송 / yjheo@kojha.or.kr

/ 공개

청렴으로 국민 신뢰 인증으로 환자 안전